

## 중국 제18기 삼중전회의 주요 내용과 향후 경제개혁의 향방

최필수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pschoi@kiep.go.kr, Tel: 3460-1022)

문익준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ijmoon@kiep.go.kr, Tel: 3460-1024)

이한나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연구원 (hnlee@kiep.go.kr, Tel: 3460-1145)

## 차 례 ●●●

1. 제18기 삼중전회 개요
2. <결정>의 주요 내용
3. 주요 부문별 경제개혁의 향방
4. 시사점

## 주요 내용 ●●●

- ▶ 중국 공산당 제18기 삼중전회 <결정>에 따르면 향후 중국에서는 시장의 역할을 확대하는 심화된 개혁이 제도적으로 이뤄지며, '체제개혁 영도소조'의 컨트롤 아래 2020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됨.  
- <결정>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환경, 국방 6개 영역에 걸쳐 16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음.
- ▶ 공유제를 재강조함에 따라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식의 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나, 국유자본운영공사 설립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있을 전망이다.
- ▶ 시장 금리로의 개혁 가속화가 언급됨에 따라 예금금리의 상한선에 대한 제약이 완화될 것이나, 전면적인 자본계정 개방은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임.
- ▶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투자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이 공표됐으며, 다양한 업종에 대한 내·외자 동등 대우가 약속됐고,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힘.
- ▶ 호적개혁의 방침이 명확히 밝혀졌으며,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운용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이거나 토지 소유권에 관한 근본적인 개혁은 없을 것으로 보임.
- ▶ 이에 우리나라는 추가 개방이 언급된 업종에 대한 진출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FTA 협상 전략을 구상하며, 새롭게 등장할 민간부문의 금융 리스크에 대응하는 한편, 임금 단체교섭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를 준비하는 등의 대응이 요청됨.

## 1. 제18기 삼중전회 개요

- 2013년 11월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이하 삼중전회)에서 <개혁의 전면적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中共中央关于全面深化改革若干重大问题的决定, 이하 <결정>)> 이 심의를 거쳐 통과됨.
- 삼중전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의 정책 기조가 명시적으로 밝혀져, 이를 통해 향후 10년 정국 운영의 방향을 읽을 수 있음(박스 참고).
- <결정>과 함께 시진핑 주석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하 <설명>)도 함께 공포되어 더 자세한 의도를 읽을 수 있음.
- <설명>은 (1) 18기 삼중전회의 초안 작성 과정, (2) <결정>에 나타난 조치들의 특징, (3) 토론 중 발생한 문제 등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

### 삼중전회(三中全會)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말한다. 중국 공산당은 매 5년마다 당 대회를 개최하여 지도부를 선출한다. 시진핑을 비롯한 현재 지도부는 2012년 11월 제18차 당 대회를 통해 선출됐다. 당의 인선을 결정하는 당시 회의를 ‘一中全會’라고 하며, 당 총서기인 시진핑을 포함하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서기가 이때 결정됐다. 2013년 2월에는 국가와 정부의 인선을 결정하는 ‘二中全會’가 열렸고, 이때 국가주석과 국무원 총리 등 주요 기구의 인사가 결정됐다. ‘三中全會’는 새로이 선출된 지도부가 향후 자신들의 정국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당과 국민들에게 제시하는 회의이다. 개방개혁 노선이 확정된 1978년 제11기 삼중전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중요한 결정들이 삼중전회를 통해 이뤄져왔다. 한편 이후에도 각종 안건을 놓고 매년 한 차례의 중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며 보통 5년간 七中全會까지 열리게 된다.

## 2. <결정>의 주요 내용

- <결정>은 6개 영역에 걸쳐 16개 부문 60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음(첨부 1).
- 6개 영역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환경, 국방임.
- 16개 부문 중 ‘(1) 개혁의 의의와 지도사상’은 총론에 해당함.
- 경제개혁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부문은 (2) 기본 경제제도, (3) 현대적 시장체제, (4) 정부의 직능 전환, (5) 재정·세제, (6) 도농 일체화, (7) 경제 개방의 6개이며,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부문은 (11) 문화, (12) 사회사업, (14) 생태환경임.

- 이 밖에 기타 부문으로 (8)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 건설 가속화, (9) 법치 중국 건설, (10) 권력운용 제약·감찰 시스템 강화, (13) 사회관리체제 혁신, (15)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 (16)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당의 지도력 강화가 있음.

■ 개혁의 목표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발전 및 국가 거버넌스 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에 있음을 밝힘.

- 즉 일시적 정책이나 개인의 역량이 아닌 ‘제도’와 ‘시스템’에 기초한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읽힘.

■ 시장과 정부의 관계를 재설정하여 자원배분에서 시장의 결정적(decisive) 역할을 강조

- 경제체제 개혁을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점으로 선정하고, 경제체제 개혁의 핵심을 ‘시장과 정부의 관계’의 재설정이라고 밝힘.
- 제14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建立)을 경제체제 개혁의 목표로 제시하고, 제16기 3중전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완비(完善)를 제시했음(표 1 참고).
  - 〈설명〉은 현재 중국경제는 시장질서 불확립, 생산요소시장의 발전 정체, 통일성 없는 시장규칙, 불완전한 시장 경쟁 등의 문제로 인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완비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함.
- 자원배분에 있어서 과거 3중전회에서 제시된 시장의 기초적(基礎的) 역할이 결정적(決定的)인 역할로 강화됨.
  - 제15기 3중전회에서 처음으로 시장의 기초적인 역할을 명시했고, 제16기 3중전회에서는 시장의 기초적인 역할 확대를 추가하였으며, 제17기 3중전회에서는 제도를 통한 시장의 기초적인 역할 확대를 강조하였음.

■ 2020년까지 핵심 부문 및 단계에서 결정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공표함.

- 2020년은 기초적 경제건설의 완성을 의미하는 이른바 ‘소강사회 건설의 해’이자 신(新)지도부의 두 번째 임기 중반에 해당하는 해임.
- 또한 제13차 5개년 계획(2016~20)의 완성 시점이기도 함.
- 이러한 시점을 제시한 것은 현 지도부가 추진하는 개혁이 단시일 내에 완성될 성격이 아닌 동시에 현 지도부의 임기 내에 완성해야 하는 과제임을 의미함.
- 2020년이라는 시점은 개혁의 긴박감과 신중함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

■ 개혁의 실행을 위해 ‘체제개혁 심화 영도소조’ 를 구성하여 최고위 지도부의 컨센서스를 통한 강력한 추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임.

- ‘재경 영도소조’, ‘외사문제 영도소조’ 등의 ‘영도소조’는 가장 중요한 시안에 대해 당 서열 최고위 인사들이 논의하는 조직인데, 이번에 ‘개혁이 영도소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민감한 부분까지 개혁이 깊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결정>에서 다루고 있는 개혁의 범위가 경제뿐 아니라 사회·정치·정부·군·환경 등 전방위적인 분야에 걸쳐 있음.
- <결정>에 따르면 현재 개혁은 ‘지속적으로 공세를 취해야 하는 시기(政堅期)’ 이자 매우 깊이 있는 단계(深水區)에 이르렀음.
- 그만큼 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크다는 것을 의미함.
- ‘영도소조’의 조장은 최고위급에서 말을 것으로 전망됨.

표 1. 중국의 과거 3중전회의 주요 결정사항

시기	주요 개혁 정책	개혁의 중점
11기 3중전회 (1978.12)	개혁개방 실시	- ‘사상해방, 실사구시’의 사상노선 확립 -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개혁개방정책 실행 결정
12기 3중전회 (1984.10)	농촌개혁에서 도시개혁으로, 가격 및 임금개혁	- ‘경제체제 개혁에 관한 결정’ 통과 -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有計劃的商品經濟)’ 실행 제기 -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종합 경제체제 개혁 추진
13기 3중전회 (1988.9)	개혁심화를 위한 환경 정비	- ‘가격, 임금개혁에 관한 초보 방안’ 통과 - 치리정돈(治理整頓) 정책(경제환경 치리 및 경제질서 정돈), 전면심화 개혁 지도방침 확정
14기 3중전회 (1993.12)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에 관한 몇 가지 문제의 결정’ 통과 -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기본 틀 제정 - 현대기업제도 건립, 농촌경제체제 개혁, 대외개방 확대 등 결정
15기 3중전회 (1998.110)	사회주의 신농촌 건설	- ‘농업 및 농촌 업무에 관한 몇 가지 중대문제의 결정’ 통과 - 가정청부경영제를 기초로 하는 통합과 분할의 이중적 경영체제 유지
16기 3중전회 (2003.10)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 재산권 개혁, WTO 가입	-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완비에 관한 몇 가지 문제 결정’ 통과 - 비공유경제 발전 장려, 국유기업 개혁, 정부기능 전환, 현대재산권제도 건립 등
17기 3중전회 (2008.10)	농촌개혁 추진	- ‘농촌개혁발전 추진에 관한 몇 가지 중대 문제의 결정’ 통과 - 농촌제도 건설 강화, 현대농업의 적극 발전, 농업의 종합생산능력 제고, 농촌 공공사업 발전 가속화
18기 3중전회 (2013.11)	개혁의 전면 심화	- ‘개혁의 전면 심화에 관한 중대 문제 결정’ *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 완비와 발전

자료: 양평섭 외(2013), 『중국의 중장기 경제개혁 과제와 전망』, KIEP 연구보고서(근간).

### 3. 주요 부문별 경제개혁의 방향

#### 가. 국유기업 개혁

■ 공유제를 재강조함에 따라, 국유기업을 민영화하는 식의 개혁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 ‘공유제(公有制)는 제반 소유제 공동발전의 기본적인 경제제도이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제도의 중요한 버팀목 이자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근본’임을 명시함으로써 국유부문 축소 여론을 일축함.

- 국유자본, (농촌) 집체 자본, (민간) 비공유 자본의 교차지분 보유를 통한 혼합소유제를 허용한다면 자본력이 우세한 국유부문이 나머지 부문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할 가능성마저 있음.
- 국유자본의 투자 영역을 국가전략·안전·국민경제 핵심산업으로 규정했는데, 실제 중앙국유기업에는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국유부문의 존속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운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그러나 다양한 보완적인 개혁 조치들이 발표되면서 국유부문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부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 현재 인사권 관리 위주의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SASAC) 체제를 자본관리 위주의 ‘국유자본운영공사 체제로 일부 바뀌어나가고, 일부 국유기업을 ‘국유자본투자공사’로 개조하겠다고 밝히면서 국유부문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유 프로젝트에 비국유 자본을 유치한다거나 비공유 자본이 통제하는 혼합소유제 기업의 발전을 장려한다는 등의 언급도 나타나 구체적인 실천이 어떻게 이뤄질지는 불분명함.

■ 국유부문의 이익은 당 기득권의 이익과 직결되므로 향후에도 근본적인 개혁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이른바 태자당이라고 하는 당 원로의 자녀들이 국유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이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국유기업은 가장 핵심적인 기득권 집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제까지 비핵심 업종에서 국유부문의 비중이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113개의 중앙국유기업과 각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기업들이 해당 업종에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중앙국유기업의 숫자는 2007년 159개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나, 2011년 이후 현재 수준으로 수렴한 이후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나. 금융 개혁

■ 시장 금리 도입 가속화(금리의 시장화)가 언급됨에 따라 예금금리의 상한선에 대한 제약이 완화될 것으로 보임.

- 2013년 7월 대출금리의 하한선을 철폐하면서 중국은 금융개혁에 있어 핵심적인 발걸음을 내딛었음(첨부 2).
- 일반 국가가 ‘기준금리’ 를 통해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반면 중국은 그동안 대출금리의 하한선과 예금금리의 상한선을 통해 명시적으로 금리를 조절해왔음.
- 이번 <결정>에서의 언급으로 예금금리의 상한선도 개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자본계정 개방은 신중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임.

- <결정>은 국경간 자본이동과 금융거래의 태환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며, 신중한 관리 틀 속에서의 외채 및 자본흐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힘.
- 이렇듯 신중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은 자본계정 개방이 전체 경제개혁의 궁극적인 단계이기 때문임.
  - o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금리 및 환율의 시장화는 이른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 의 구성 요소로, 정부가 어떤 두 부분의 통제를 완화한다면 궁극적으로 모든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를 완화해야 함.
  - o 이는 정부의 거시조절 능력과 경제운용의 영향력이 완전히 자유주의 국가 수준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과연 중국정부가 단시일 내에 그것을 감내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움.
- 자본계정의 개방에 대해서는 당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임.
  - o 최근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설립에 있어서도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이 자본계정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 국내로의 유입을 막는 ‘방화벽’ 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조치가 알려진 바 없음.
  - o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토론 당시 전 국가통계국장을 포함한 수십 명의 인사들이 연대 서명을 통해 금융 투기세력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시범구 설립에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진통을 겪었음.

■ ‘중소형’ 민간은행 설립이 허용될 것이라고 밝혀졌으나, 이들이 금융개혁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2013년 9월 이미 20여 개의 민영은행들이 설립 신청을 한 상태임(표 2 참고).
  - o <결정>에서 발표된 예금보험제도 건립과 금융기관의 퇴출기제 마련도 민간은행의 설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됨.
- 민간은행 설립은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중소기업 금융지원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긍정적인 의의가 있음.
  - o 2010년 이후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 속에서도 은행권은 다른 부문보다 훨씬 높은 이윤을 누려왔으며, 대출권을 독점하고 막대한 예대마진을 챙겨온 거대 국유은행들은 현 상황을 타개할 유인이 별로 없음.
  - o 최근 민영 중소기업의 도산 위기와 융자난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적절한 금융지원 방안이 요청되고 있음.
  - o 민영은행은 투자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민영부문의 대출 문턱을 낮출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재 알려진 민영은행 후보들은 모두 유동성(현금)이 풍부한 업종에서 자라난 민영기업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은 본격적인 상업은행 업무보다는 모기업의 자금조달일 수 있음(표 2).

표 2. 최근 민영은행 설립 신청현황

지역	잠정명칭	발기인	원(原)업종
浙江 溫州	溫商銀行	溫州商會	투자
浙江 溫州	-	華峰集團	화학
浙江 杭州	-	阿里巴巴	전자상거래
重慶	-	力帆集團	자동차
上海	-	均瑤集團	항공운수, 도소매
上海	-	復星集團	의약, 유통, 부동산
北京	-	京東商城	전자상거래
北京	中關村銀行	中關村科技園區內企業	컴퓨터, 정보통신

표 2. 계속

지역	잠정명칭	발기인	원(原)업종
江蘇	-	南京三胞集團	통신서비스·부동산
江蘇	-	雨潤集團	식품·물류
江蘇	蘇寧銀行	蘇寧云商	가전유통
廣東 深圳	-	騰訊控股	통신서비스
廣東 揭陽	-	中德產業園 金屬行業協會	금속
廣東	-	美的集團	가전제품
廣東	-	香江集團	가구·유통·에너지
福建 泉州	-	泉州 현지 민영기업	-
湖北	荊州銀行	凱樂科技	신소재·부동산

자료: 「民營銀行躊躇起步」, 『財經』(2013. 9. 23), p. 33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다. 대외개방 수준 제고

- <결정>에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진입 전 내국민 대우와 투자업종에 대한 네거티브 리스트 체제를 공표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임.
  - 현재까지 중국은 외국과의 투자협정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최근 상하이자유무역 시범구에서 처음으로 이를 채택할 것으로 공표함.
  - 이를 위해 내·외자의 관련 법규를 통일할 것이 언급됨.
  
- <결정>에서 직접 언급된 업종들에서는 향후 가시적인 진입제한 완화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금융·교육·문화·의료 산업에서 점진적인 개방을, 육아·양로·건축설계·회계·상업물류·전자상거래 등에서 외자진입의 직접적인 제한 철폐를 공표함.
  
- FTA 체결 가속화와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 참여를 명시적으로 밝힘에 따라 한·중, 한·중·일 FTA와 RCEP 등 다양한 FTA 추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주변국과의 FTA 체결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거대 경제권과의 FTA도 고려할 수 있음.
  
- 변경 지역의 개방을 언급하면서 주변국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를 언급함에 따라 해당지역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됨.
  - 특히 정책금융기구를 설립해서까지 인프라 연계에 나서겠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실크로드 경제권 형성이라는 언급으로 보아 동북지역과 서북·서남지역의 인접국들과 이어지는 다양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됨.

- 두만강개발계획(GTI) 등을 통해 중국-북한-러시아 접경 지역의 개발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도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음.

## 라. 재정·세제개혁 심화

- 1994년의 분세제(分稅制) 개혁 이후 누적되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발전방식의 전환에 맞게 재정·세제개혁을 심화함.
  - 향후 예산심사의 중점을 균형지향이나 적자규모 조절이 아닌 지출예산 위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재정정책이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음.
  - 중앙이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필요한 부분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분세제의 기본 틀은 유지됨.
    - 혁명지구, 민족지구, 변경지구, 빈곤지구에 대한 재정보조가 확대될 것이라고 밝힘.
- 직접세의 비중을 높임에 따라 조세의 형평성이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임.
  - 2011년 이래 개인소득세의 과표를 올리고 누진율을 강화하는 개혁이 있어 왔음.
  - 또한 소비세에서도 고(高)에너지소모, 오염유발, 사치품에 중과세하는 소비세 개혁이 예고됨.
- 부동산세는 현실을 고려하여 확대한다는 방침임에 따라 단시일 내에 획기적인 적용이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현재 상하이와 충칭의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세가 시범운영 중이나 세율이 매우 낮아서 투기억제 기능이나 지방정부의 대체세원으로서의 기능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중앙과 지방의 사업권과 지출 권한에 있어 명쾌한 기준이 제시됨.
  - 중앙의 고유한 영역은 외교·안보·시장관리이며, 중앙과 지방이 공통으로 대처할 영역은 사회보장과 범지역 인프라 건설이고, 지방의 영역은 각종 건설 프로젝트와 지역성 공공서비스라고 밝힘.
- 이밖에 환경세와 자원세 등 새로운 세금이 도입될 것으로 밝혀짐.

## 마. 호적 개혁

### ■ 호적 개혁에 대한 도시 규모별 기준이 명쾌하게 밝혀짐.

- 소도시의 전면개방, 중급도시의 점진개방, 대도시는 정주(定住) 조건의 합리적인 조절, 초거대도시는 인구 유입에 있어 엄격한 통제의 원칙을 밝힘.
- 이는 도시의 발달 단계별 농민공 시민화 소요재정 문제를 감안한 매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음.
  - 2013년 6월 말 현재 31개 성시(省市) 중 14개가 일원화된 호적제도 설립을 위한 점진적인 조치들을 취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완전 평등 대우도 등장했으나 이들은 주로 텅 발달된 지역임.
  - 그러나 베이징, 상하이 등 발달 수준이 높은 도시에서는 각종 사회보장 비용 등으로 농민공 일인당 도시민화 비용이 10만 위안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발달된 도시일수록 농민공에 대한 평등 대우가 어려운 실정임.

## 바. 토지 개혁

### ■ 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을 부여하고, 도농 통합형 건설용지 시장을 건설하는 등의 개혁 방침으로 농민들의 토지사용권 운용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임.

- 농지 수용가격이 토지 판매가격의 1/10 정도에 불과하여 농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어, 그 보상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려는 개혁이 현재 진행 중임.
- 또한 농민들의 토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개혁이 지난 17기 3중대회 이후 진행 중이었음.
- 도시 인근 및 내부에 있는 집체 소유 토지를 수용 과정 없이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도 일부 지역의 실험단계를 거쳐 진행 중이었음.

### ■ 그러나 이러한 개혁이 토지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토지 공유제의 근간을 흔들면 장기적으로 실지농민이 대량 발생하고 도시 슬럼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토지 소유권의 부여나 이의 자유 거래까지는 언급되지 않음.
  - 그동안 경직적인 토지제도가 농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사실이나,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토지 세습을 통해 거대 지주의 탄생을 억제하고 농민공의 뿌리를 보존함으로써 도시 빈민가 형성을 억제해온 긍정적인 면이 있음.
  - 만약 토지 소유권에 대한 영구 처분이나 취득이 가능해진다면 농촌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통해 붕괴할 수도 있음.

## 사. 지방정부의 채무 건전성

- 지방정부의 채무 문제에 대한 중앙의 해결 의지를 명확히 함.
  - 중앙의 정책 때문에 형성된 지방재정의 부족은 중앙의 이전지출을 통해 조절한다고 밝힘.
- 향후 지방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 정책금융기구 설립,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참여 등이 언급됨.
  - 이렇듯 다양한 융자 루트가 허용된다면 지방정부가 고정자산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채무 건전성 및 불투명한 채무관계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보다 투명하고 전문적인 정책금융기구와 민간자본이 인프라 건설에 나설 것으로 기대됨.

## 아. 새로운 발전 성과 평가지표 구축

- 지방정부의 발전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성장률 일변도가 아닌 에너지소모·환경파괴·과잉설비·과잉채무 등의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적용할 것으로 밝힘.
  - 이러한 지표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지방의 경제발전 방식 변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종합적인 지표가 과연 얼마나 일자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는냐는 두고 보아야 할 것임.
  - 지방정부가 중앙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 조정에 협조하지 않고 과잉설비 투자를 묵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 고용창출에 있으며, 중앙도 그것을 알기에 강력한 통제를 하지 못했음.

## 자. 거시경제 운용에 대한 시사점

- 경제운용의 기본노선은 2020년까지 2010년 소득의 두 배를 달성하는 소강사회(小康社會)를 건설한다는 것이며, 이에 따른 최소한의 성장률은 매년 7% 이상임.
  - 리커창 총리는 매년 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7.2% 성장률을 유지하며, 도시 실업률을 4%대로 유지하는 것이 거시경제 운용의 관건이라고 밝힘(2013.10.21. 中華全國總工會 연설, www.ifeng.com).

- 소강사회 건설이 재천명된 만큼 위에 제시된 수치들이 경제운용의 하한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추정하고 중국 정부의 경제운용에 대응할 수 있음.
- 최근 리커창 총리의 강도 높은 개혁 노선인 이른바 리코노믹스의 추진에 따라 경기 냉각을 감내하면서까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황이므로, 과연 중국이 감내할 수 있는 성장의 하한선이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분분했음.

## 차. 경제 이외 분야의 주요 개혁 내용

### ■ 많은 계층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도 당의 영도를 재확인함.

- ‘협상민주(協商民主)’를 추진하여 광범위한 다층제도화 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 정치개혁의 중요한 목표임.
- ‘협상민주(協商民主)’는 중국 사회주의 민주정치(社會主義民主政治)의 독특한 특징이며, 이를 통해서 당의 인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루트라고 설명하고 있음.
- 그러나 개혁이 당의 지도 하에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면서, 향후 보수적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함.
- ‘사회주의 민주정치(社會主義民主政治)’에 근거하여 많은 계층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루트를 다양화하고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며, 정당간 경쟁에 기초하는 다당제등에 관한 언급은 없었음.

### ■ 사법개혁을 통해서 헌법에 기초한 법치 추구

- 최근 불공정한 사법행위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사법의 공신력이 약해지고 사법체제와 업무체제 간의 불합리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사법개혁을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최근 인터넷의 발달로 역울한 공권력 피해 사례들이 공개되면서 인권과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뿌리깊은 불만이 장차 사회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함.
- 성급 이하의 지방법원·감찰원의 통일된 관리체제, 행정구역과 분리된 사법관할제도 구축, 사법권력운영체제 수립, 사법절차 규범화 등이 추진되는 동시에 노동교화제도를 폐지할 예정임.

### ■ 반부패제도를 통한 권력의 견제 시스템 강화

- <설명>은 반부패 문제가 당내에서 심각하게 토론하였던 문제라고 밝히면서, 반부패기구들이 분산되어 있어서 통일되어 있지 않고 책임도 불분명함을 문제점으로 지적함.
- 현재 지방의 기율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당위원회와 중앙기율위원회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양쪽의 담당범위와 책임이 명확하지 않았음.
- 향후 지역의 당위원회 및 중앙기율위원회의 책임을 명확히하고 중앙기율위원회의 통제가 강화되면서 지방 관리들의 부패 적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앙기율위원회의 지방, 행정부, 기업에 대한 순시제도 강화 등도 언급되면서, 향후 중앙기율위원회의 권한이 확대되고 왕치산(王岐山) 중앙기율위 서기의 영향력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국가안전과 사회안정을 위한 인터넷 및 정보 시스템 안전이 중국이 직면한 새로운 위기라고 명시하면서 향후 인터넷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것으로 명시함.

- 여론을 통제하고 지도한다는 정부의 정책 틀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음.

■ 산아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둘째 아이 출산 붐이 일 수도 있으나, 장기적인 인구의 추이를 돌이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 <결정>이 발표된 직후 일부 언론은 중국에서 둘째 아이 출산 붐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그동안의 인위적인 억제가 풀리면서 도시를 중심으로 출산 붐이 나타날 수도 있음.

○ 산아제한 정책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도시의 공적 단위에 근무하는 계층이었으며, 농촌이나 소수민족 지역, 자영업자들은 상대적으로 제약에서 자유로웠음.

- 국가보건계획생육위원회는 <결정>에서 언급된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가 각 성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시기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힘(신화망 2013.11.16).

- 그러나 소득 증대와 소양 제고에 따른 출산기피 현상도 점점 커질 것이므로 이 조치가 인구의 폭증으로 이어 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국가안전위원회’ 를 설립하여 사회통합 · 치안확보 · 국익수호를 도모

- 대외적인 문제와 대내적인 문제를 모두 포함하는 종합적인 기구일 가능성이 높음.

- <결정>에서는 국가안전위원회가 사회치안 문제를 주로 다룰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시진핑 주석은 <설명>에서 대외적인 내용을 언급함.

○ 대외적으로는 국가의 주권, 안전, 이익발전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보호, 대내적으로는 정치적인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음.

■ 생태보호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

-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목표로 자원의 유상사용 제도와 생태보상제도를 구축하겠다고 밝힘.

○ 국가자연자원자산관리체제(國家自然資源資產管理體制)의 건립을 결정하고 모든 국민이 자연에 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함.

○ 환경보호를 위한 레드라인(紅線)을 설정하겠다고 새롭게 밝힘으로써 향후 관련된 세부내용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됨.

■ 18기 삼중전회의 토론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 시진핑 주석은 (1) 개혁에 관한 믿음과 용기를 가질 것, (2) 사상해방(思想解放) 및 실사구시(實事求是), (3) 큰 안목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요구함.

- ‘개혁의 믿음과 용기’라는 표현은 2013년 3월의 전인대에서 발표된 ‘정치적 지혜와 용기’의 연장선으로, 전면적인

개혁심화를 위한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의지로 해석됨.

- 구시대적 관념과 습관을 타파하는 ‘사상해방’과 ‘실사구시’를 강조하고, 개혁개방의 선구자였던 덩샤오핑의 대표이론을 인용함으로써 앞으로 고강도 개혁의 당위성을 역설함.
- 전면적인 개혁심화정책이 당과 국가의 중대한 사업임을 강조함으로써, 각 분야별 이익을 추구하기보다는 보다 큰 안목인 오위일체의 개념으로 바라볼 것을 요구함.

## 4. 시사점

### ■ <결정>에서 대외 개방이 언급된 업종에 대한 진출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점진적 개방 대상으로 언급된 금융·교육·문화·의료 업종과 외자진입의 제한 철폐를 공표한 육아·양로·건축설계·회계·상업물류·전자상거래 업종에 대한 시장 개척을 서둘러야 할 것임.
-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2011년 개정된 외상투자지도목록이 조만간 다시 개정될 수 있음.
- 상기 업종은 외국 자본에게는 미답지 업종이므로, 선점 효과를 누리려면 서둘러 움직여야 함.
- 한국은 교육·문화·의료 분야에서 비교우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육아·양로 시장에서도 상당한 잠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됨.
- 내·외자 관련 법규를 통일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관련 법의 개정 동향을 주시해야 할 것임.

### ■ <결정>에 한·중 FTA 협상에 관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언급된 만큼 이에 발맞춘 새로운 전략적 협상 방안을 세워야 함.

- 중국이 FTA 적극 추진 기조를 밝혔고, 환경보호·투자보호·정부구매·전자상거래 등을 새로운 의제로 수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러한 의제를 좀 더 여유를 가지고 다룰 수 있게 됨.
- 또한 시장진입·세관감독·검역 시스템 등 비관세 장벽의 주요 분야에 대한 개혁을 언급했으므로 한·중 FTA를 통해 구체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
- 단 <결정>에 언급되지 않은 분야나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서는 중국 측의 태도를 보아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할 것임.

### ■ 중국의 자본시장 규모 확대와 위안화 국제화의 가속화가 예측되므로 금융 부문에서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함.

- 금리가 시장화되고 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국내외에서 대중국 금융상품이 더 많이 개발될 수 있음.
- 위안화 자본계정의 궁극적인 개방과 위안화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범금융권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대중 무역흑자국이므로 위안화 축적에 지나치게 앞서 나갈 필요는 없음.
- 이는 위안화 결제 허브 구축이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와 같은 중요한 정책 판단의 기초가 됨.
- 대부분의 위안화 국제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홍콩 및 위안화 채권 발행을 이미 시작한 싱가포르의 관련 동향에도 주목해야 함.

■ **차이나 리스크의 주된 발원지로 일컬어지는 지방정부의 불투명한 채무는 상당 부분 개선될 것이나 정책금융 기구나 민간금융 부문에서 새로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

- 중국은 은행파산법도 제정되어 있지 않고 예금자보호법도 없는 상황이라서 신설되는 민영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임.
- 감독 당국은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설립 신청 은행들이 제출하는 자발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심사하고 있는 수준임.
- 지방정부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고 정책금융기구나 민간자본이 인프라 건설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장부는 투명해지겠지만,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 활동한 적이 없는 새로운 금융조직들이 어떤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할지 미지수임.

■ **그동안 국유자본의 고유 영역이었던 인프라 건설 분야에 민간자본의 진입이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한 진입 준비를 해야할 것임.**

- 국유 프로젝트에 민간 자본이 참여하도록 한다는 언급과 지방정부의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초 인프라 건설에 민간자본의 투자를 허용한다는 언급이 있음.
- 이제까지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은 지방정부 재정으로 이뤄져왔으며 외자의 비중은 1% 정도로 극히 예외적으로 이뤄져왔음.
- 앞으로 신형도시화 수요에 따라 환경, IT, 건축설계 등에서의 외자 진입이 예상됨.
- 최근 중국에서 도시철도(경전철 및 지하철) 건설 붐이 일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에서도 새로운 분야이므로 외국 자본과 기술이 참여할 여지가 많을 것으로 전망됨.

■ **변경 지역의 인프라 건설 분야에 대한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한국도 북·중·러 연계 발전에 관심이 크므로, 중국이 설립하겠다는 정책금융조직의 동향에 주목하여 동북아 개발은행 등의 이슈를 잘 제기해야 함.
- 아울러 GII와 같은 기존 국제개발기구를 적극 활용해야 함.

■ **〈결정〉에서 노동보수의 상승을 천명하고 있으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임금인상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임.**

- 중국정부는 임금인상을 기꺼이 감내할 의지가 있을 뿐 아니라 권장하기까지 하고 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함.
- 특히 기업 임금의 단체협상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것은 이제까지 형식적이었던 노조의 역할이 크게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노동 협상과 쟁의에 대비해야 함.

■ 이제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토지는 주로 수용을 거쳐 출양되는 국유토지였으나, 앞으로는 집체토지의 공급이 점차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집체토지는 계획에 의한 국유토지보다 좀 더 적시적소에 공급될 가능성이 큼.
- 그러나 단순한 출양계약과 달리 재산권과 사용권이 좀 더 복잡하게 얽혀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법적 대비를 해야 함.
- 실제로 광저우 등지의 집체토지 사용 경험에 따르면 건축등기는 얻을 수 있으나 토지등기는 얻을 수 없었다고 함.<sup>1)</sup> KIEP

---

1) 최필수·조성찬(2013), 『중국 토지공급체계의 변화와 개혁과제』, p. 74. KIEP 연구자료 13-02.

<첨부 1>

<결정>에 나타난 16개 영역의 60개 항목

1. 개혁 심화를 위한 주요 의의와 지도 사상	(1)	▶ 개혁개방의 의의
	(2)	▶ 개혁개방의 지도사상 - 개혁심화의 목적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 건설 - 시장이 자원배치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도록 개혁 심화
	(3)	▶ 개혁개방의 중점 - 개혁심화의 중점은 경제체제 개혁 - 높은 강도의 시장화 개혁 추진
	(4)	▶ 개혁 시간표 - 당의 영도 견지, 2020년까지 주요 부분 및 단계에서 결정적 성과를 내도록 함.
2. 기본적인 경제제도의 유지 및 완비	(5)	▶ 재산권보호제도 완비 - 현대적 재산권제도 완비 - 공유제 및 비공유제 경제의 재산권 보호
	(6)	▶ 혼합 소유제경제 발전 - 국유·집체·비공유 사이의 교차 지분보유를 통한 혼합소유제 허용 - 국유 프로젝트에 비국유 자본 유치 - 근로자의 자사주 보유 - '국유자본운영공사' : 국유자본의 수권(授權) 운영체제 구축 - 알맞은 국유기업은 '국유자본투자공사' 로 개조 - 국유자본의 투자영역은 국가전략·안전·국민경제 핵심산업으로 - 국유자본수익금이 공공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까지 30%로 제고(현재 약 25%)
	(7)	▶ 국유부문의 현대식 기업제도(現代企業制度) 완비 - 각 국유기업의 기능과 범주 명확화 - 국유자본이 지속적으로 통제하는 영역은 자연독점 산업 - 회사법인 관리구조 구축: 전문경영인제도 도입, 회사 내부직원의 인사 및 임금제도 자유화, 재무·예산 정보 공개 - 국유자본 경영투자 책임 추구
	(8)	▶ 비공유제 경제의 건강한 발전 지원 - 비공유제 기업의 국유기업개혁 참여 지원: 비공유자본이 통제하는 혼합소유제기업 발전 장려
3. 현대적 시장체제 완비 가속화	(9)	▶ 공평하고 투명한 시장규칙 건립 - 통일된 시장진입제도 시행 - 외국인투자에 대해 진입 전 내국민 대우 및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 방법 도입 - 공상등록제도(工商注册制度)의 간소화, 자본등록 전 등기 가능 - 전국 통일시장 형성을 위한 장애물 해소 - 지방 보호주의 배격
	(10)	▶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시스템 완비 - 시장에 의한 가격결정, 정부의 부당한 개입 축소 - 물·석유·천연가스·전력·교통·전신 가격의 시장요소 도입 - 정부의 가격결정은 공공사업, 공익서비스, 네트워크 효과의 자연 독점 분야에 국한 - 농산품 가격 형성 시스템 완비
	(11)	▶ 도농 통합 건설용지 시장 건립 - 농촌집체 건설용지의 출양·임대·출자 허용, 국유토지와 동등 대우 - 토지 징발범위 축소, 다양한 농민보장 시스템 도입 - 국유토지 유상 사용범위 확대, 비공익성 토지 행정배당 축소 - 국가, 단체, 개인을 모두 고려하는 토지가치 수익분배 시스템 구축

	(12)	<p>▶ <b>금융시장체계 완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산업 대내외 개방 확대: 민간자본 중소형 은행 설립 허용</li> <li>- 정책금융 조직개혁 추진</li> <li>- 주식 발행등록제도 개혁 추진</li> <li>- 채권시장 개발, 직접금융 비중 제고</li> <li>- 보험 보상시스템 완비, 재난 보험제도 구축</li> <li>- 인민폐 환율시장화 시스템 완비, 금리시장화 가속화, 시장수요공급을 반영하는 국채수익률 곡선 구축</li> <li>- 국경간 자본이동과 금융거래의 태환성 점진적 개선, 신중한 관리 틀 속에서의 외채 및 자본흐름 관리 시스템 구축</li> <li>- 인민폐 자본개정 태환 가속화</li> <li>- 예금보험제도 건립, 금융기구의 퇴출기제 마련</li> </ul>
	(13)	<p>▶ <b>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학연 협동 혁신 시스템 구축</li> <li>- 시장 주도형 연구개발</li> <li>- 지식재산권 운용 및 보호 강화</li> <li>- 기술형 중소기업 융자제도 개선, 리스크 투자 시스템 완비</li> <li>- 인재 선발 및 관리체제 개혁, 원사(院士) 은퇴 및 퇴출 제도 도입</li> </ul>
4. 정부의 직능 전환 가속화	(14)	<p>▶ <b>거시조절체계 정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정책과 화폐정책 위주의 거시조절 체계 정비</li> <li>- 전략적 자원개발이나 공공 이익 프로젝트 외에는 정부가 기업 투자 프로젝트에 일절 관여하지 않도록 함</li> <li>- 발전 성과 평가체계 개선: 경제성장 일변도가 아닌, 에너지소모·환경파괴·과잉설비·과잉채무 등을 가중치로 판단</li> <li>- 국가 전체의 경제 채산제도 구축: 전국 및 지방의 대차대조표 편제, 부동산·금융 등 기초 데이터 통일 플랫폼 구축</li> </ul>
	(15)	<p>▶ <b>정부 직능의 명확한 수행</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 기구 간소화 및 권한 이양, 행정 심사제도 개혁</li> <li>- 정부의 발전전략, 기획 등 제정과 실시 역할 강화, 시장감독 강화, 공공서비스 강화</li> <li>- 학교, 과학연구소, 병원 등의 행정계급 취소, 사업단위의 법인화</li> </ul>
	(16)	<p>▶ <b>정부조직구조 최적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제 개혁 적극 추진</li> <li>- 당과 정부의 기구개혁 총괄, 관련부서 직책관계 조절</li> <li>- 재정 인원수 통제: 직원 수에 따른 간부인원 수 책정, 기관 수와 임원진 수 축소</li> </ul>
5. 재정·세제 개혁 심화	(17)	<p>▶ <b>예산관리제도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산제도의 규범화 및 투명성 제고</li> <li>- 예산 심사의 중점을 균형지향 및 적자규모 조절에서 지출예산 정책 위주로 전환</li> <li>- 지방에 대한 재정보조(이전지급) 개선: 혁명지구, 민족지구, 변경지구, 빈곤지구 등에 대한 재정보조 확대</li> <li>- 경쟁 영역에 대한 지방재정보조 취소</li> </ul>
	(18)	<p>▶ <b>세수제도 개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세 비중 제고, 세율 간소화</li> <li>- 소비세 징수 범위 및 세율 조정: 에너지소모·오염유발·사치품에 중과세</li> <li>- 부동산세의 현실을 고려한 확대</li> <li>- 자원세 개혁, 환경보호세 추진</li> </ul>
	(19)	<p>▶ <b>사업권과 지출권한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앙: 국방·외교·안보·시장관리</li> <li>- 중앙+지방: 일부 사회보장, 범지역 인프라 건설</li> <li>- 지방: 프로젝트 건설, 지역적인 공공서비스</li> </ul>

6. 도농 일체화 시스템 건립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신형 농업경영체계 구축 가속화</b></li> <li>- 농촌토지 집체소유권 유지, 절대보호 농경지 엄수</li> <li>- 가정을 기본적 경영단위로 하되 다양한 집체 합작 기업 실험</li> <li>- 농민에게 토지의 사용, 수익, 이전, 수탁관리, 담보권 부여</li> </ul>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농민에게 더 많은 재산권 부여</b></li> <li>- 농민에게 집체재산에 대한 지분점유, 수익, 유상퇴출 및 저당, 담보, 계승권 부여</li> <li>- 농촌 택지의 재산권 보호하되 그에 대한 저당, 담보, 이전은 신중히 실시</li> <li>- 농촌 재산권거래시장 구축</li> </ul>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농 생산요소간 평등 교환 및 공적자원 균형 배분</b></li> <li>- 농민 생산요소 권익 보호, 농민공의 동일업종 동일임금 보장</li> <li>- 농촌예금은 농촌에 쓰이도록 보장</li> <li>- 양식(곡물) 생산지 보상체제 구축, 농업 보험제도 개혁</li> <li>- 도농 사회 서비스의 균등화 추진</li> </ul>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도시화 발전체제 시스템 완비</b></li> <li>- 도시건설관리혁신 추진: 도시건설 투·융자 시스템 구축 및 규범화</li> <li>- 지방정부의 채권발행 허용</li> <li>- 기초인프라와 주택건설을 위한 정책금융기구 설립 연구</li> <li>- 탈농업 인구에 대한 조건부 시민화 추진</li> <li>- 호적제도 개혁 가속화: 소도시 전면개방, 중급도시 점진적 개방, 대도시 정주 조건 합리화, 거대도시 엄격 통제</li> <li>- 도시정착 농민을 도시주택 및 사회보장체제에 포함</li> <li>- 중앙의 재정이전 지출을 농민공 시민화와 연결하여 실시</li> </ul>
7.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투자 진입제한 완화</b></li> <li>- 내외자 법규 통일</li> <li>- 금융, 교육, 문화, 의료: 점진적 개방</li> <li>- 육아, 양로, 건축설계, 회계, 상업물류,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외자진입 완화</li> <li>- 자유무역시범지역 추가 설립</li> <li>- 기업과 개인의 대외투자 확대 허용</li> <li>- 외국과의 투자협정 가속화, 해외 투자심사체제 개혁</li> </ul>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FTA 체결 가속화</b></li> <li>- 양자간, 다자간, 지역 및 차(次)지역(sub regional) 경제협력 구축</li> <li>- 시장진입, 세관감독, 검역 시스템 개혁</li> <li>- 환경보호, 투자보호, 정부구매,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의제 수용</li> <li>- 높은 수준의 글로벌 FTA 네트워크에 동참</li> <li>-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 개방협조 확대</li> </ul>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내륙, 변경 개방 확대</b></li> <li>- 내륙 무역, 투자, 기술혁신 협력발전 추진</li> <li>- 가공무역 혁신, 내륙의 산업 클러스터 형성 도모</li> <li>- 정책금융기구 설립을 통해 주변국 교통 인프라와의 연계 추진</li> <li>- 실크로드 경제권 추진, 해상 실크로드 건설</li> </ul>
8. 사회주의 민주정치제도 건설 가속화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민대표대회제도의 확대 개혁</b></li> <li>- 인민대표대회의 예산결산 심사감독 및 국유자산 관리감독 직능 강화</li> <li>- 인민대표대회의 업무 시스템 개선</li> </ul>
	(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협상민주 제도화 발전 추진</b></li> <li>- 정치협상회의 체제 완비</li> <li>- 민주당파의 정견 개선 확대</li> <li>- 소수민족 화해정책 추진</li> </ul>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기층민주의 발전</b></li> <li>- 다양한 형식의 기층민주 협상 확대, 대중협상제도화 추진</li> </ul>

9. 법치중국 건설 추진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헌법의 법률권위 옹호</b></li> <li>-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을 넘는 권위를 갖지 못함</li> <li>- 법률고문제도 보급</li> <li>- 과학적인 법치건설 지표 및 심사표준 수립</li> </ul>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행정집행체제 개혁 심화</b></li> <li>- 행정집행의 절차 간소화</li> <li>- 식품의약, 산업안전, 환경보호, 노동보장, 해역해도(海域海島) 등 중점 분야에서의 집행 능력 제고</li> <li>- 행정집행 책임제도 및 형사사범 제도와의 연계성 정비</li> </ul>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법에 따른 공정한 사법권·검찰권 행사</b></li> <li>-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검찰권 수립</li> <li>- 성급 이하 지방법원, 검찰원의 통일된 관리체제 추진</li> <li>- 법조인 분류관리제도 수립</li> <li>- 행정구획과 적절히 분리된 사법관할 제도 구축</li> </ul>
	(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법권력 운영 시스템 수립</b></li> <li>- 사법 직권배치 최적화</li> <li>- 배심원 제도 개혁</li> </ul>
	(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인권사법보장제도 완비</b></li> <li>- 차압·압류·동결 등의 사법절차 규범화</li> <li>- 오판(誤判) 방지, 교정, 책임추궁 시스템 완비</li> <li>- 고문, 신체학대 엄금</li> <li>- 사형죄목 축소, 노동교화제도 폐지</li> <li>- 국가 사법구제제도 구축: 법률보조제도 개선</li> </ul>
10. 권력운용 제약·감찰 시스템 강화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권력제약 및 협조체제 형성</b></li> <li>- 당과 국가영도체제 완비, 민주집중제 견지</li> <li>- 주요 간부 행사권력의 제약, 협조 강화 및 개선, 행정감찰과 심사감독 강화</li> <li>- 지방 각급 정부 및 기타 부서의 권력 리스트 제도 추진</li> </ul>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반부패체제 시스템의 혁신 및 제도 보장</b></li> <li>- 중앙기율위원회가 주요 당과 국가기관에 파견한 기구의 명칭 및 관리 통일</li> </ul>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간부들의 청렴 풍조 강화</b></li> <li>- 형식주의, 관료주의, 향락주의, 사치주의 배격</li> <li>- 회의, 문서 축소</li> <li>- 공공경비 지출 축소</li> <li>- 고위 간부 업무생활 보장제도 규범화, 주택·사무실 확대 억제, 불법 비서·차량 억제</li> </ul>
11. 문화 시스템 창신 추진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화관리체제 완비</b></li> <li>- 당과 정부가 감독하는 국유문화자산의 관리조직 구성</li> <li>- 여론 지도체제 구성</li> <li>- 인프라관리, 콘텐츠 관리, 업계관리 및 인터넷 위법 관리체제 구축</li> <li>- 네트워크 여론관리 업무체제 구축</li> <li>- 기자회견의 제도화 추진, 뉴스 종사자 직종 자격제도 수립</li> </ul>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대식 문화시장체제 건립</b></li> <li>- 문화시장 진입허가 및 퇴출 시스템 완비</li> <li>- 국유문화 단위의 기업화 및 주식제 개혁</li> <li>- 비공유제 문화기업 발전 장려</li> <li>- 제작 및 출판, 제작 및 방송의 분리 허용</li> </ul>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현대공공문화 서비스체제 구축</b></li> <li>- 공공문화 서비스체제 건설협조 시스템 구축</li> <li>- 대중 평가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li> <li>- 공공문화 서비스 사회화 발전 추진</li> </ul>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문화개방수준 제고</b></li> <li>- 대외문화교류 확대</li> <li>- 외향형 문화기업 배양</li> </ul>
12. 사회사업개혁 혁신 추진	(4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교육분야 종합개혁</b></li> <li>- 대입시험과 각 대학의 신입생 모집을 분리, 대입시험 선택권 확대</li> <li>- 의무교육은 시험 없이 가까운 곳에 입학</li> <li>- 초중고 학업수준 시험과 종합 소양평가 진행</li> <li>- 학교내부 관리구조 개선</li> </ul>
	(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취업·창업체제 시스템 구축 촉진</b></li> <li>- 정부 취업촉진 책임제도 구축</li> <li>- 창업우대 혜택정책 지원</li> <li>- 정부의 공공관리 및 사회서비스 근무처에 대졸자 취업 확대</li> </ul>
	(4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합리적인 수입분배 구조 형성</b></li> <li>- 노동보수 증가율과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동등 제고</li> <li>- 최저임금 및 임금지불 보장제도 개선, 기업 임금 단체협상제도 구축</li> <li>- 상장회사의 투자자 보상제도 개선, 소액주주 권리 보장</li> <li>- 조세·사회보장·중앙 재정 지출을 주요 수단으로 하는 재분배 시스템 완비</li> <li>- 공공자원 출양 수익의 합리적 배분</li> </ul>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 건설</b></li> <li>- 사회와 개인이 공동 부담하는 기초양로보험제도 유지</li> <li>- 도농주민의 기초양로보험제도와 기초의료보험제도의 통합</li> <li>- 사회보험계약 이전상속정책 완비: 보험가입비용 납부범위 확대, 사회보험요금 축소</li> <li>- 점진적인 퇴직연령 연장 연구</li> <li>- 사회보장 예산 결산제도 완비</li> <li>- 사회보험기금 투자관리 및 감독강화</li> </ul>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의료위생체제 개혁 심화</b></li> <li>- 의료보장, 의료서비스, 공공위생, 약품공급, 관리체제의 종합적인 개혁 추진</li> <li>- 의료성과 평가 시스템과 의료 인재배양·인사제도 구축</li> <li>- 비영리 의료기관을 장려하는 동시에 다양한 형식의 의료제도 개혁 장려</li> <li>- 한 자녀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되 부부 중 독자가 있을 시 둘째 출생 가능, 점진적인 생육정책 완화</li> </ul>
13. 사회관리체제 혁신	(4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관리방식 개선</b></li> <li>- 시스템 관리 견지</li> <li>- 법에 의한 통제 견지를 통한 사회적 모순 해결</li> <li>- 인민대중 각 방면 각 층의 이익 호소에 즉각 반응</li> </ul>
	(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조직 활력도모</b></li> <li>- 정부와 사회의 분리 가속화: 사회조직의 권한·책임 및 범치자치 역할 강조</li> <li>- 사회조직 및 국외 비정부조직에 대한 관리 강화</li> </ul>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사회갈등 예방 및 해결 시스템 혁신</b></li> <li>- 사회안정위험 평가 시스템 구축</li> <li>- 행정재심제도 개혁: 행정재심안건 심사 시스템 및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li> <li>- 인터넷 접수제도 실행: 기존 서신이나 방문 등의 행정절차 편리화</li> </ul>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공안전체제 구축</b></li> <li>- 식약품 안전관리기관 완비, 엄격한 관리제도 구축</li> <li>- 식약품 안전보장: 식품 원산지 추적제도와 품질명시제도 구축</li> <li>- 안전관리 시스템 개혁: 재난·재해 조사관리체제, 안전예방통제체제 구축</li> <li>- 국가안전위원회 설립: 국가안전체제와 국가안전전략 완비</li> </ul>

14. 생태문명제도 건설 가속화	(51)	<p>▶ <b>자연자원 재산권제도와 용도 관리제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자원 재산권 제도 확립, 전민소유의 자원자원 소유자 책임 실행</li> <li>- 국가자연 자원자산관리체제 구축</li> </ul>
	(52)	<p>▶ <b>생태보호 레드라인(紅線) 확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체기능구(主體功能區) 제도 건지</li> <li>- 국립공원체제 구축: 국토 개발보호제도 건립</li> <li>- 자연환경 수용능력 관측정보 시스템 구축</li> <li>- 생태환경 손해책임추궁제 수립</li> </ul>
	(53)	<p>▶ <b>자원의 유상사용제도 및 생태보상제도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연자원 및 기타상품 가격개혁 가속화</li> <li>- 자원사용비용 및 보상제도 유지</li> <li>- 공업용지 및 택지의 가격비교 시스템 구축: 공업용지 가격제고</li> </ul>
	(54)	<p>▶ <b>생태환경보호관리체제 개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보호관리제도 구축 및 개선: 환경감독과 행정집행을 독립적으로 운영</li> <li>- 오염배출허가제도 완비: 기업의 오염배출량 통제제도 시행</li> <li>- 환경 훼손 시 손해배상제도 실시</li> </ul>
15. 국방 및 군대 개혁 심화	(55)	<p>▶ <b>군대체제 개편 및 조정 개혁 심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도관리체제 개혁 추진: 직능 배치와 조직 최적화</li> <li>- 군대 규모 최적화: 병종, 장교와 사병, 부대와 기관의 비율 최적화</li> <li>- 비전투 인원 및 조직 축소</li> </ul>
	(56)	<p>▶ <b>군대 정책, 제도 개혁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군사인력자원정책 제도 구축 및 완비</li> <li>- 군비관리제도 완비</li> <li>- 군사법규제도 체계 완비</li> </ul>
	(57)	<p>▶ <b>군민 융합발전 추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방공업체제 및 국방과학 기술협동 혁신체제 완비</li> <li>- 국방과학연구 생산관리 및 무기장비 구매체제 시스템 개혁</li> </ul>
16. 전면적 개혁 심화를 위한 당의 지도력 강화 및 개선	(58)	<p>▶ <b>체제개혁 심화 영도소조 조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체제개혁 심화 영도소조 조직; 개혁의 설계, 조정 및 감독체제 강화</li> </ul>
	(59)	<p>▶ <b>체제개혁 심화를 위한 조직확보 및 인재구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부인사제도 개혁, 인재채용 시스템 개선</li> </ul>
	(60)	<p>▶ <b>당의 대중노선 유지, 사회참여 시스템 구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회, 공청단, 부녀연합회 등 인민단체의 역할 활용</li> <li>- 개혁시범 업무 강화, 선전, 여론 지도 강화</li> </ul>

자료: <결정>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첨부 2>

**신(新)지도부 집권 후 2013년 주요 부문 경제개혁 동향**

행정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월, 리커창 총리는 첫 임기 내에 국무원 행정심사 절차를 1/3 이상 축소한다고 밝힘.</li> <li>- 5월, 국무원은 133개 항목의 행정심사를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으로 이양</li> <li>- 6월, 발개위는 26개 항목의 행정심사를 취소하거나 하급기관으로 이양</li> </ul>
금융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월, 중국인민은행은 대출금리 하한선을 철폐</li> <li>- 7월, 적격 외국기관투자자(QFII) 전체 배정액이 8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증가</li> <li>- 8월, 국무원은 상해 자유무역구 설립을 허가</li> <li>- 9월, 20개 민영은행 설립 신청 접수</li> </ul>
재정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월, 부분적인 기업세수 조정으로, 13년 기업 세금부담이 약 1,200억 위안 축소</li> <li>- 7월, 국가 감사국은 지방정부 부채 심사를 실시, 새로운 지도자그룹의 낭비 및 공공지출을 단속</li> <li>- 7월, 국무원은 향후 5년간 정부의 사무실·강당·호텔·초대소류의 건물설립을 금지</li> </ul>
호적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월, 국무원은 소도시와 읍의 호적제도를 전면적으로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중등도시, 최종적으로 대도시까지 호적제도 완화를 확대시킬 예정</li> <li>- 이미 몇몇 성(省)에서 호적개혁을 시범진행 중임. ex) 9월, 산둥(山東)은 중소도시 호적 이적 제한제도 완화를 발표</li> </ul>

자료: 각종 언론을 참고하여 저자 정리.